



교양교육지원센터규정

규정번호	KTC-D-40	1/2
제정일자	2019.04.12	
개정일자		
관리부서	교양교육지원센터	

교양교육지원센터규정

제 1 장 총 칙

제 1 조 (목적) 이 규정은 강원관광대학교(이하 “본 대학교”라 한다)에 교양교육지원센터(이하 “센터”라 한다)를 설치하여 교양 교육과정의 개발과 편성을 위한 기반 연구, 교양 교육과정의 운영 및 평가체계확립, 기초능력 신장을 위한 제반 업무 등의 수행을 통한 교양교육의 내실화를 기하고 교육효과를 높이기 위함을 목적으로 한다.

제 2 조 (직무) 센터는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.

1. 교양교육운영 업무
 - 가. 교양교과목 교과과정 개선 연구에 관한 사항
 - 나. 교양교육과정 편성 및 운영에 관한 사항
 - 다. 교양과목 연구 및 개발 지원에 관한 사항
 - 라. 교양필수과목 강사 추천 및 운영 관리에 관한 사항
 - 마. 교양필수과목 기본 운영매뉴얼 제작에 관한 사항
 - 바. 기초수학능력 진단 및 평가에 관한 사항
 - 사. 학습자 교양교육 만족도 조사에 관한 사항
2. 기타 교양교육지원 및 센터의 목적을 달성하는데 필요한 사항

제 2 장 조 직

제 3 조 (조직) ① 센터에는 센터장을 두며 조교수 이상의 전임교원 중에서 총장이 임명하고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.

② 센터장은 센터를 대표하고 센터의 업무를 총괄한다.



교양교육지원센터규정

규정번호	KTC-D-40
제정일자	2019.04.12
개정일자	
관리부서	교양교육지원센터

2/2

- 제 4 조 (연구원 및 책임교수) ① 센터에는 필요한 경우 연구원을 둘 수 있다.
 ② 연구원은 교육학 전공 석사학위 취득 이상이거나 관련 분야의 연구실적이 있는 자로 총장이 임명하고,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
 ③ 센터에는 필요한 경우 책임교수를 둘 수 있다.

제 5 조 (직원 및 행정조교) ① 센터에는 필요한 경우 직원과 행정조교를 둘 수 있으며, 센터의 전반적인 사업을 지원한다.

제3장 교양교육 운영위원회

제 6 조 (교양교육운영위원회)

- ① 교양교과과정의 지원에 따른 교양교육과정 개발, 개편, 운영, 재검토, 평가, 질관리에 관한 사항등을 수행한다
- ② 위원회는 5인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며 위원장은 센터장으로 한다
- ③ 위원은 센터장의 추천에 의해 총장이 임명하며, 임기는 1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.

제 7 조 (회의) ①위원장은 필요시에 위원회를 소집한다.

- ②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최하고,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.

제 8 조 (운영세칙) 기타 센터의 운영에 관한 세부사항은 운영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센터장이 따로 정할 수 있다.

부 칙

(시행일) 이 규정은 2019년 4월 12일 부터 시행한다.